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133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663,8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63,8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인 10,663,8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663,8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D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에 대해 D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

별지